

[방송사용]

2024년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자료집

2024. 1.



목 차

I . 공고문	1
II . 2024년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4
III.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21
불임1. 신청서 양식	25
불임2. FAQ	31

I . 공고문

2024년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2024년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6.

시 청 자 참 여 프 �로그 램 제작 지원

1. 사업 목적

- 시청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시청자 권익증진에 힘쓰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원분야	사업 내용
○ 지상파방송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SO) 및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정부 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지원 불가

3. 지원자격 및 사업기간

-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보도PP, 일반PP)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지원 방송사의 선택에 따라 사업기간 별도 설정 가능

4.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1. 26.(금) ~ 2024. 2. 21.(수)
- 신청방법 : 공문 포함 신청서류 일체 E-mail 제출
- 접수처 : time@kcmf.or.kr
-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센터지원권의부 02-6900-8342, 8349
-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 불가

5. 사업설명회

- 일정 : 2024. 2. 6.(화) 14:00 예정
※ 일정 중 1회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게시판 공지
- 운영방법 : 대상방송사의 지역분포를 고려한 비대면(ZOOM) 설명회 개최
 - ZOOM 링크 : 2. 5.(월) 13:00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최초 게시물)에
수정 공지
 - ZOOM 접속시 대화명 : [방송사명_이름](#)
- 참석대상 : 2024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희망 방송사
 - 방송사별 2인(사업담당자, 회계담당자)까지 참석 가능
- 참석신청 : 메일을 통한 참석 신청
 - 「time@kcmf.or.kr」로 참석 방송사명,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여 송부
-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센터지원권의부 02-6900-8342, 8349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 변경 시 별도 재안내 예정

II . 2024년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2024년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목적 및 내용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정의>

방송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은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여 「방송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을 말함

- 시청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시청자 권익증진에 힘쓰기 위함

지원분야	선정방법	비 고
○ 지상파방송	공모 심사	○ 예산 내에서 '24년도 지원 사업자에 배분
○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합 계		

□ 지원대상

- 「방송법」 제9조에 따른 허가·등록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선정방식 : 공모에 의한 지원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채택료는 2024년 1월 ~ 12월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에 한함

※ 2024년 1~3월 방영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소급지원 가능

□ 지원방식 : 방송채택료에 대한 국고와 자부담 매칭방식 지원

- 자부담은 40% 이하로 정수화된 수치로 설정(예: 40%, 39%, 38% 등)

※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칭비율 조정 가능

※ KBS는 자부담 50%이상으로 설정

※ 최근 5개년 이상 미참여 신규사업자 지원 첫해 100% 지원

※ 전년도 평가 우수사업자(최고득점) 지원율 우대 적용, 전년도 저평가 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서 미흡 사업자는 지원율 축소 또는 탈락

□ 주요 지원조건

- (사업 성실 수행) 선정된 사업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 및 심사 조건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지원 사업을 성실히 완료하여 함
- (관련법령 및 규칙 등 준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부가하는 사업수행 지침 및 지원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작지원 고지)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권고하는 방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임을 고지하여야 함

② 신청 방법

□ 제출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문 참조
- 신청서류 양식 : [붙임] 양식 참조
 - 각 서식 상의 작성지침 및 예시에 맞추어 작성하고, 작성 후 해당 지침 및 예시는 삭제하여 제출
-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센터지원권의부(02-6900-8342, 8349)
 - E-mail : time@kcmf.or.kr

□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지정양식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cmf.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에 직인 날인하여 제출

③ 지원사업 심사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원칙

-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해 사업수행 방송사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접 관련되는 인사는 배제하고, 사회복지.미디어.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2인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 적격심사 : 제출서류를 완비하고 지원조건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함
※ 지원조건 : 자부담 최소비율 준수, 운영위원회* 구성, 전담직원 여부

* 방송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3인 이상, 총 5명 이상 구성 권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 외부 3인 구성 시 관행적, 형식적 인력 구성을 지양하며, 유관기관 또는 관련분야 인력으로 구성 권고

-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평가지표		심사항목	배점(점)
정량 평가 (40)	사업자 역량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업 수행 전담인력 인원 및 배치의 적절성② 전년도 추진실적(전년도 평가결과)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평가 평균을 적용	10 15
	예산 편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③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최소비율 준수여부 및 자부담 비율의 정도	10
	운영위원회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④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및 구성의 적절성 ※ 외부인 3명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	5
		소 계	40
정성 평가 (60)	사업추진계획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⑤ 계획 수립 및 추진 방안의 적절성 ※ 월별 편성계획, 프로그램 수급 방안⑥ 프로그램 내용, 운영의 차별성 및 독창성⑦ 공공성 및 공익성, 다양성 확보 방안⑧ 사업추진 및 홍보의 적극성 ※ 활성화방안, 행사·홍보스폿·홈페이지 등 홍보방안 등	15 15 15 15
		소 계	60
		합 계	100

- 평가점수 60점 미만 지원사업자는 사업 선정시 탈락
- 심사표에 의한 평가결과, 사업자별.지역별 균형 및 2024년 사업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액 결정

④ 보조금 교부 [선정 방송사限]

□ 교부 신청

- 교부금액 :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여부 및 최종 지원금액 결정
- 신청방법
 - 선정 방송사는 별도 안내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제반 서류 제출
 - 교부신청 서류 접수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 등록(예치형 사업)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 등록 및 승인 완료 후 보조금(지원결정금액) 교부 신청 등 사업 진행
- ※ 방송사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재단이 승인 후 교부 가능(시스템 변경사항)

< 과년도 대비 변경사항 >

기존 운영(~'22년)

- 재단(상위사업자)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월별 직권 교부

운영방식 변경('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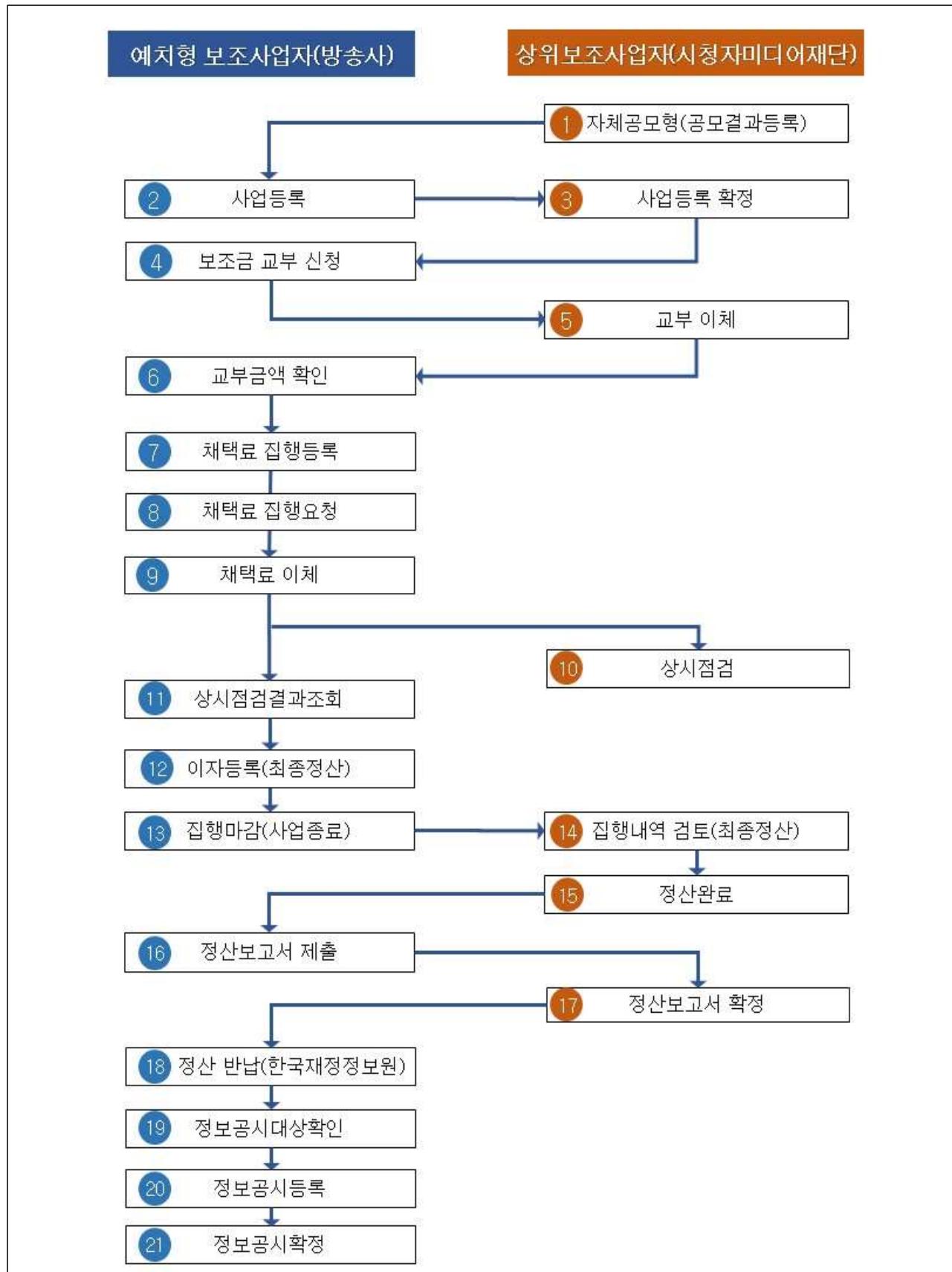
- ▶ ○ 방송사(하위사업자)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 상 지원금 교부 신청
→ 재단(상위사업자) 승인 및 교부(4월, 10월 각 1회)

- ※ (변경사유) 상위사업자의 직권 교부 기능은 중앙관서 직접수행사업과 IT 취약계층 업무대행을 위해 제공되는 기능으로, 하위사업자는 교부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상위사업자는 그 교부신청을 교부결정하는 절차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 공지사항 중)
- ※ (관련법령) 「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등
- ※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및 e나라도움 공지사항 “직권교부결정 기능 이용 관련 공지(2022.12.21.)” 참조

○ 통장 관리 유의 사항

- 해당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계좌 개설
- 미집행 금액 및 이자수익은 반납해야 함
- 예산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채택료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 보조금 교부 등 사업 수행 절차 >



⑤ 지원사업 평가 및 관리

□ 중간평가

- 평가시기 : '24년 7월 ~ 8월
- 평가대상 : 지원사업 선정 사업자
- 평가내용 : 사업추진 실적(목표 분량, 예산 집행률) 및 편성 프로그램 내용
- 평가방법 :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등
- 후속조치 : 평가 결과에 따른 적의 조치 및 2차 지원금 교부

□ 종합평가(최종 사업수행 결과 평가)

- 평가시기 : '25년 1월
- 평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률 등 종합평가
- 평가방법 :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 후속조치 : 관련 법규에 의거 보조금 환수 등 적의조치
- 기타사항 : 평가결과 등은 차년도 사업자선정 심사 시 반영

□ 현지실사

-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실적 파악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금집행현황 점검 등
- 기간 : '23년 6월~7월.10월~11월 중 1회, 필요시 추가 실사 시행

□ 회계검사

- 점검시기 : 반기별 회계검사(중간: '24년 8월, 최종: '25년 1월)
※ 회계 관리를 위한 수시 현장 검사 및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점검내용	세부점검 항목
지원사업 회계처리에 대한 종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사업자별 집행 실적 분석 -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유형 분석 -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예산 관련 개선사항 제안 등
회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 관련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및 교부조건 준수 여부 - 사업 집행실적 대비 보조금 집행내역 일치 여부 등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신청.변경신고

○ 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대상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및 예산
변경 승인 신청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방송 송출(보급) 일정 변경 또는 축소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내 기 계획된 프로그램을 송출(보급)하지 못할 경우 - 기 계획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 계획된 편성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 기타 사업수행 계획 등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신고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전담 인력 변경

○ 변경승인요청 및 변경신고 방법

- 육하원칙에 의한 서면 제출
- 제작비 축소 변경 승인 요청 불가

○ 신청일 :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시청자미디어재단 도달 기준)

○ 신청양식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사유

※ 공문(제목 : OO사업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신청)으로 제출하고, 사업 변경내역을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기재

○ 미신고 또는 자연신고는 결과평가시 반영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 위반 시 조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 기재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수행계획서상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협약 또는 제작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당해 사업연도를 제외한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재단 홈페이지 및 관련부처·기관 등에 위반 사실 등을 공지할 수 있음
-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함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비 집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점검결과 협약 또는 제작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비 집행비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사업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기 교부한 제작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동 사업에 대한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⑥ 추진 일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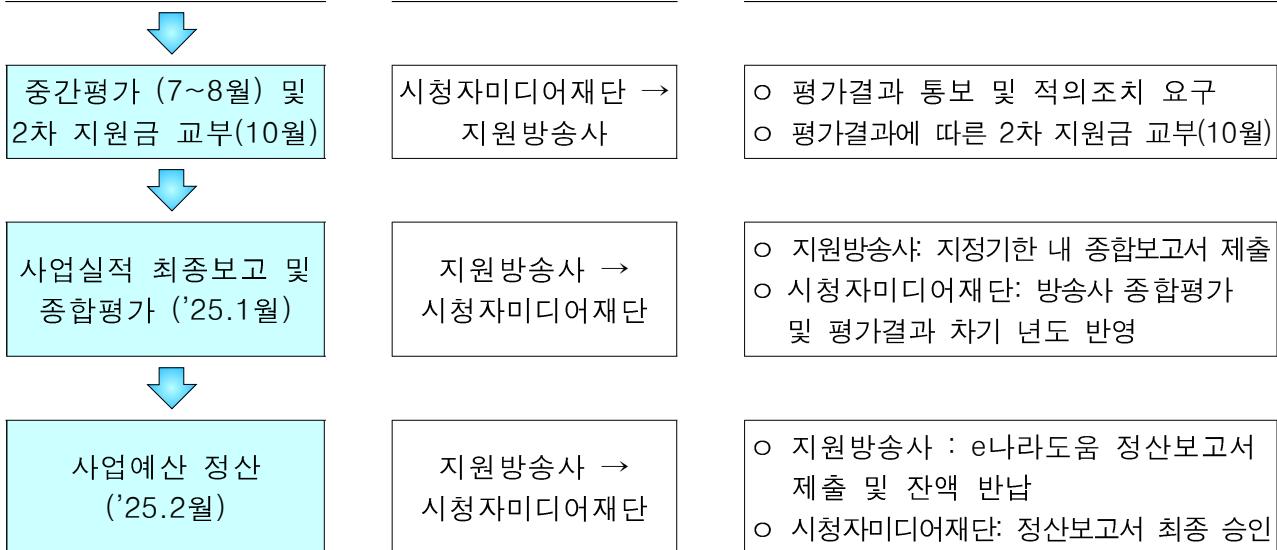
□ 추진 일정

세부내용	추진일정(안)
○ 지원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1. 26.(금) ~ 2. 21.(수)
○ 2024년 사업자 선정 및 지원비율 결정	○ 2월 말 ~ 3월 초
○ 교부신청서 접수 및 e나라도움 사업 등록	○ 3월 중
○ 지원금 1차 교부(70%)	○ 4월 중
○ 중간평가	○ 8월 중
○ 지원금 2차 교부(30%)	○ 10월 중
○ 방송실적 보고 및 방송채택료 지급 승인 신청	○ 매월 7일까지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종합평가	○ '25년 1월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추진 절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월별 채택료 집행내역 등록 및 이체실행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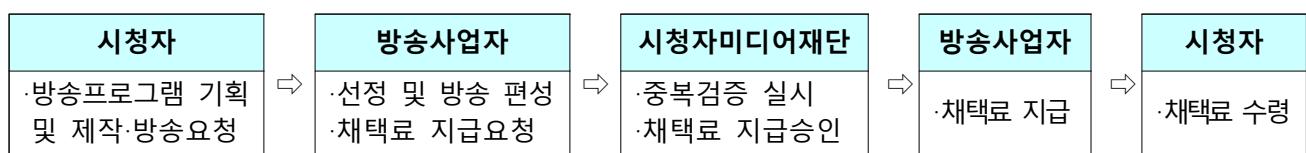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e나라도움 월별 집행내역 상시점검 실시

7 방송채택료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 지급 절차

- 시청자의 요청에 의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를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지원받아 시청자(제작자)에게 지급함

<방송채택료 지급절차>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채택료 지급 승인 요청 공문을 수령, 각종 증빙자료(방송물 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승인 공문 발송

<증복검증 필요사항>

- 중복작품의 범위는 타인은 물론 본인의 기존 작품도 포함
- 중복검증에 필요한 필수 요청사항
 - 시청자(제작자) 신상정보(생년월일, 이름) 및 작품명 정확히 표기
 - 신청 콘텐츠에 대한 키워드 최소 5개 이상 기입(최대한 자세히)
(키워드 예시 : 콘텐츠명(역사탐방), 장소(광화문), 지역(서울), 카테고리(여행), 주제(역사), ... 등)

□ 방송채택료 지급 승인 신청

- 신청기간 : 매월 7일 이내
- 신청내용 : 전월분 지원금 집행실적(방송채택료 지급증빙자료 포함) 및 당월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 승인 신청

《신청예시 : 6월 신청내용》

- ① 4월분(전월분) 지원금 집행실적
 - 5월에 수령한 지원금(4월분 방송물)의 지급내역
- ② 5월 방송분 신청
 - 5월에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급 승인 공문 수령 후 e나라도움에서 방송채택료 지급**
※ 승인 공문 수령 날짜가 통장 출금일 이전이어야 함, 공문 수령이전 지급 시 환수 조치

□ 지급 기준

- 신청 접수된 방송물의 선정 및 등급은 각 방송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며,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불(不)채택작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 통보(e-mail 등 증빙 보관)
 - ※ 방송물 등급의 선정은 각 방송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선정
- 정규 편성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방영된 방송물에 지급
- 등급별 차등 지원, 분당 3~7만원 지급(청취자참여프로그램 : 5천원 ~ 1만원), 개인(단체 포함) 600만원 이내 연간 지급한도 설정
 - ※ KBS 열린채널의 경우 편당 지원 가능

□ 지원 제한

- 정부 타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 지원 포함)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방송채택료 지원 금지
- 비디오 저널리스트(VJ), 외주 제작업체(구성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채택료 지원 금지
- 타 방송사에서 기방영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채택료 중복지원 금지
 - ※ 중복작품 신청 시, 향후 2년간 방송신청 불가
- 개인(단체 포함) 연간 지급한도 설정에 의하여 방송채택료 누적 지원액이 600만원 초과 시 지원 금지

⑧ 공통 지원조건 및 기타사항

□ 공통 지원조건

- 선정된 사업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 및 심사 조건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지원 사업을 성실히 완료하여 함
- 지원대상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동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와 현지실사, 기금집행상황 점검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함. 해당직무에 불응하여 발생한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방송사에 있음
- 지원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등 방송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영된 프로그램을 비영리적 사업 또는 공익적 활동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요청 할 수 있음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 사업결과물에 의해 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9조(보조사업)

-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권고하는 방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임을 고지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행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기타 사항

- 본 자료집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내규 및 결정 사항에 따름
- 지원사업자 선정 이후 불성실하게 지원사업에 임하거나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동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금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요청함

III.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지원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원금은 해당 사업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제작비와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실질 소요예산 수립)
※ 차기년도 사업 평가에 교부액 대비 예산집행률을 반영함

< 지원금 편성 가능 항목 >

- 인건비성 예산(채택료)

※ 사업수행 관련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표준 정산서 작성시 해당내역 미작성

- 지원금 대상 사업자는 자체부담금 대 지원금의 매칭비율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전액 소진) 이후 지원금 집행**, 정산시 미집행액은 반납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시 >

- 매칭지원비율(60%) 사업자

- 총 제작비의 40% 자부담으로 선집행, 나머지 60% 지원금으로 후집행 처리
ex) 연간 방송채택료 10백만원 : 자부담 지원금 4백만원 선집행, 지원금 6 백만원 후집행 처리

- 총 제작비 및 지원 비율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함
- 지원금 일괄 사용 후에 자체부담금을 사용하는 행위 절대 금지함

2. 지원금 회계처리기준

-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미집행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본 지원금에 의해 발생하는 은행이자 등 일체의 금융이득은 정산 후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함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 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계획 변경시 신고 또는 승인 후 사용
-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지원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별 별도 통장 개설·관리
 - 통장은 법인 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 한 가지 이상의 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사업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예산집행 내역이 구분되도록 집행·관리하여야 함

지원유형	통장 개설(예)	비고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금 사용 계좌	.계좌 명 : 법인명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 개설) .계좌실명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로 설정 .인터넷 뱅킹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지급 원칙 .현금 인출 사용 불인정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자부담 통장으로 입금 후에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채택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인정범위	추가증빙자료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이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체확인증(은행발급용만 인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e나라도움 집행정보 등록 시 필수 첨부· 원천징수영수증(중간·종합평가 시 제출)

- 사업예산의 증빙서류 원본은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사업자는 해당사업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불인정하는 채택료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채택료(인건비성)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증빙 준수

-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금액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제작비로 인정함
 - . 방송채택료 등 (기타소득 8.8%)
-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시 가산세 납부)

[붙임 1]

신청서 양식

<신청서류 작성지침>

1. 모든 서류의 사업자명, 방송사명은 「방송법」 제9조에 의해 허가 또는 등록한 법인명(상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아래의 서류를 1set(원본)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① 신청 공문 1부
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

* ③,④번은 컨소시엄 구성 사업일 경우 제출

- | |
|---|
| ③ 컨소시엄 방송사의 예산 및 업무분담 계획 [붙임2]
④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협약서 [붙임3] |
|---|

- 1) 제출서류는 첨부된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 후 직인 날인하여 스캔
- 2) 공문 및 제출서류 전체를 한 번에 스캔하여 E-mail 통한 제출
3.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오류 및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작성 및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 2024년 2월 21일(수) 18:00
5. 제출방법 : 공문 포함 신청서류 일체 E-mail 송부
6. 제출처 : time@kcmf.or.kr
7.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센터지원권의부(02-6900-8342, 8349 / time@kcmf.or.kr)

[붙임 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자명	※ 방송사명 기입(「방송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법인명)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명 : 000000000000 2. 방송일시(본방기준) : ex) 매주 금요일 18시00분 ~ 18시30분 3. 분량(본방기준) : 0,000분 4. 편성기간 : 2024년 00월00일 ~ 00월00일(총 00회)					
	총 사업비	총 원	지원금	총 원(%)		
			자부담	총 원	(%)	
	주 소	□□□□□				
	연락처	총괄 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일반전화		
실무 담당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일반전화		
		E-mail		FAX		

2024년 월 일

사업자명 :

직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계획서

※ 컨소시엄의 경우 방송사별 기재 요망

1.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명 : (00년부터 방영)
- 기획의도 :
- 제작방식 : (예) 스튜디오 + 시청자 제작 영상을
- 구성내용

※ 해당 내용은 사업자 선정 심사 항목 중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의 차별성, 독창성’과 ‘공익성 및 공공성, 다양성 확보방안’에 해당 되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권고

O
-
O
-
O
-
O
-
O
-

2. 자체 담당인력

구 분	소속부서 / 직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e-mail	

※ 구분은 총괄책임, 실무책임, 실무담당, 예산(회계)담당 등 투입인력에 대해 구분요망

3. 2024년 프로그램 편성계획 ※ 구체적으로 기재

- 편성기간 : 2024년 월 일 ~ 월 일 (주)
- 편성시간 : 매주 요일 00:00 ~ 00:00 (○○분)
- 편성채널 및 지역 : ○○채널 ○○, ○○, ○○ 지역 송출
- 편성 횟수 및 분량 : 시청자가 제작한 콘텐츠 분량 포함 참여프로그램 전체 분량 작성

구분	주간	월간	연간	비고
본방	○회	○회	○회, 총 ○○○분	
재방	○회	○회	○회, 총 ○○○분	
합계	○회	○회	○회, 총 ○○○분	

* 오프닝(아나운서 소개 멘트, 신청자 인터뷰 등)을 모두 포함한 편성분량으로 기재

○ 편성 세부계획 : 채택료 지급을 위한 승인 분량 기재

* 시청자가 제작한 콘텐츠 방송(승인)분수 표기 (스튜디오물 경우 시민MC 등이 출연한 경우 해당 가능)

구분	본 방송		방송채택료(원)			비 고
	횟수(회)	분량(분)	지원금(a)	자부담금(b)	a+b	
1월		(승인분수 표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2024년 12월까지의 편성실적 및 계획은 반드시 기재(자부담 내역 포함)

※ 자체적으로 2024년 1월~2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기재

※ 자부담 선집행이 원칙이므로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 초기에는 자부담 금액만 입력

4. 2024년 프로그램 수급계획

- 수급 방안 : ex) 시청자미디어센터, 학교 등 유관기관 연계방안
- 세부 내용

수급대상	분량(분)	내 용	비 고
	(채택료 지급 승인분수 표기)		
계	000분	총 000편	

※ 연간 예상 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운영위원회 구성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단체	지역	이력
1					O O
2					O O
3					O O
4					O O
5					O O

- ※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외부인을 반드시 3명 이상 포함하되, 공동체라디오는 예외)
- ※ 외부 운영위원은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인력으로 구성 권고
- ※ 추천하는 운영위원은 해당 소속단체에서 추천하여야 함

6.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구분	추진계획	비고
홍보캠페인	<p><i>ex) 별도의 캠페인 영상 제작 등</i></p> <p>○</p> <p>○</p> <p>○</p>	
스크롤자막	<p><i>ex) 홍보 스크롤 자막</i></p> <p>○</p> <p>○</p> <p>○</p>	
홈페이지	<p><i>ex) 팝업창 및 공지여부</i></p> <p>○</p> <p>○</p> <p>○</p>	
행사	<p><i>ex) 자체 공모전 등</i></p> <p>○</p> <p>○</p> <p>○</p>	
기타	<p><i>ex) 복지관, 학교, 지역공동체 등 연계방안</i></p> <p>○</p> <p>○</p> <p>○</p>	

* 구분은 홍보캠페인 스크롤자막, 홈페이지, 홍보행사 등 추진내용에 대해 구분 요망, 구체적으로 기재

7. 예산산출내역 (세부편성계획에서 도출된 분수와 일치해야 함)

구분	방송채택료(원)				
	분량	채택료단가	지원금	자부담금	채택료 합계
자부담		3만원	0원		
		4만원	0원		
		5만원	0원		
		6만원	0원		
		7만원	0원		
지원금		3만원		0원	
		4만원		0원	
		5만원		0원	
		6만원		0원	
		7만원		0원	
총계	0	-	0	0	0

* 총계 부분은 자동 산식이 걸려 있으므로 작성 금지 (음영처리 안된 부분만 작성할 것)

[붙임 2]

컨소시엄 방송사의 예산 및 업무분담 계획

방송사명	대표자	분담업무 내용 (※구체적 표기)	재원분담(천원)		
			계	지원금	자부담

* 대표방송사를 먼저 기재, 전체 금액은 세부 실행예산서와 일치

[붙임 3]

2024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확약서

(※ 컨소시엄 사업 구성 사업만 해당)

- 신청사업명 :
 사업 유형 : 컨소시엄 구성 ()
 연대방송사 : ○○○○○ 외 개 방송사
 대표방송사명 :
 대표자명 :
(이하 선임된 대표단체의 대표로 기준)
 소재지 :
 생년월일 :
 현주소 :
 연락처 :

위 본인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4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 아래의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운용 등 사업과 관련한 제반 책임은 선임된 대표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4. . .

선임대표 : (인)

각 방송사명(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기관명), 대표자명 및 대표 날인

- | | | |
|----------|--------|-----|
| ① 방송사명 : | 대표자명 : | (인) |
| ② 방송사명 : | 대표자명 : | (인) |
| ③ 방송사명 : | 대표자명 : | (인) |
| ④ 방송사명 : | 대표자명 : | (인)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FAQ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FAQ

1.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방송을 본업(業)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직접 기획·제작하여 방송사에 편성(송출)을 요청하여 방송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중 방송채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서 결정하게 됩니까?

- 우선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방송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이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최종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방송채택료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3. 사업시행일 전에 본(초)방을 하였고, 사업시행일 이후에 재방을 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방송채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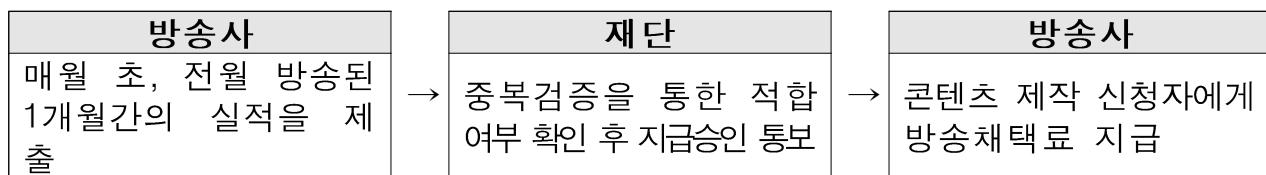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원대상은 해당년도 사업시행일(지원 사업자 선정) 이후, 본(초)방 프로그램에 한해 방송채택료를 지급합니다.
- 만약, 해당년도 사업시행일(지원사업자 선정) 전 본(초방)의 경우 소급적용하여 방송채택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4. 방송채택료 지원금과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지원 대상 방송사 선정 및 매칭비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평균적으로 6:4 비율로 이루어지며, 다만 신규참여 방송사 및 최근 5년 이상 미참여 방송사는 자부담없이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5. 방송채택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 되나요?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을 경우, 아래 절차를 거친 후 방송사에서 방송채택료를 지급하게 됩니다.(방송 후 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



6.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합니까?

- 운영위원회는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외부인 3인(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경력자 권고)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일반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방송사 내부인력과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위원회 참여 인사 간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반드시 방송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현행 방송법(제86조)상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각 방송사는 반드시 심의기구를 두고 방송되기 전에 심의를 하여야 하며, 방송된 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게 됩니다.

8.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방송실적이 없거나 주간 편성이 결방되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까?

- 방송실적이 없는 경우 목표달성을 및 예산집행률 등 평가에서 감점에 해당되며, 일시적으로 편성이 결방되어 대체 편성을 하게 된 경우 불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1 <편성계획 : 매월 1회, 수요일 편성>

- 8월 수요일 편성이 결방된 경우: 사전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편성 결방 신고 후, 대체 편성 시행 → 평가 등 불이익 없음

예시 2 <편성계획 : 매주 화요일 편성>

- 8월 둘째 주 결방된 경우 : 편성 결방 신고 필요 없으나 대체편성을 하지 않을 시, 예산 집행률과 목표분수(실적) 달성을 영향을 끼침

9.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반드시 단일.고정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의 개별코너로 편성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바람직한 방향은 단일.고정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만, 방송사별 자율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개별코너도 가능합니다.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포맷 변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청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10. 방송실시 결과를 제출할 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여 방송한 분량, 즉 방송채택료 지원부분만 해당합니까?

- 고정.단일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프롤로그를 포함한 방송분량을 결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코너일 경우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채택료 지원부분만 실시결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편성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편성기간은 반드시 연간단위이어야 합니까?

- 편성기간은 방송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은 20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분에 한해 지원됩니다.

12.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송채택료 지원 시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 보다 많은 시청자의 참여를 위해 연간 개인(단체 포함)은 6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정부의 여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의 결과물 또는 활용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택료를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조치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방송채택료 지원 시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 방송채택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12.5만원 초과 지급 건에 대해서는 8.8%('19년부터 적용)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12.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예시 >

- ① 방송채택료 150,000원 지급
- ② 기타소득 : 150,000원
- ③ 필요경비 : 60% 인정
- ④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 150,000원 - (150,000원 * 60%) = 60,000원
- ⑤ 원천징수세액 = [60,000원 * 20%(소득세)] + [(60,000원 * 20%) * 10%(주민세)]
= 12,000원 + 1,200원 = 13,200원 (8.8%)

14. 신규 방송사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신규방송사 첫해 100%지원하며 차 년도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2년차부터 지원 비율을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지원합니다.

15. 편성·운영 관련 우수방송사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전년도 사업 최종평가를 통해 결정된 우수 통보 받은 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에는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최고득점자 1개 사업자를 심사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지원율을 우대할 예정입니다.(지원율 상향 적용)
※ 우수 통보 받은 모든 사업자가 지원율을 우대 받지는 않습니다.

16. 유튜버가 제작한 콘텐츠를 방영하고 채택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 유튜버로 활동중인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방영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채택료 지원이 가능하지만, MCN 소속일 경우 불가합니다.

17. 회계집행 등 e나라도움과 관련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업 및 사업자 등록’, ‘채택료 집행등록 및 이체’, ‘월별 상시점검 확인’, ‘집행정산 및 이자등록’ 관련해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매뉴얼을 배포해 드리며,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다만, e나라도움 상에서 시스템 상 오류, 입력 불가 등의 오류가 발생하게 될 시 ‘e나라도움 상담센터’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